

대여분납제에 관한 시행세칙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학칙 제41조 2항에 규정한 대여분납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2조 (대여분납금액) 대여분납금액은 수업료의 50% 이내로 한다.<개정 2014. 9. 1>

제3조 (신청절차 및 제출서류) 대여분납을 원하는 자는 대여분납신청서(별지1)와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(학사일정에 명시)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9. 1>

① 삭제<2014. 9. 1>

② 삭제<2014. 9. 1>

③ 삭제<2014. 9. 1>

제4조 (신청자격) ① 1학년 2학기 등록시부터 졸업학기(규정의 학기 제외)까지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4. 9. 1>

② 신청자격의 제한 : 지난학기 대여분납금을 종강일(학사일정상의 학기말고사 마지막일)까지 상환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학기 대여분납금 신청을 할 수 없다(연체다음학기 1회에 한함).

제5조 (대여분납기간) ① 개강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② 단, 2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료(1개월경과마다 월 1%)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①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장학금을 수령시에는 장학금으로 대여분납금을 최우선 상환하여야 한다.

제6조 (휴학) ① 대여분납으로 등록한 학생이 학기중에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, 대여분납금 및 연체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다음학기 복학이 불가하다.

② 복학시의 등록금 납부액은 학칙시행세칙<제2장 수강신청 및 등록>에 따른다.

③ 휴학기간중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(대여분납금 미상환시의 조치) ① 대여분납금으로 등록한 해당학기의 종강일(학사일정상의 학기말고사 마지막날)까지 대여분납금 및 연체료를 상환하지 않을시에는 제증명서의 발급이 중지된다

② 대여분납금을 미납한 학생은 다음학기 등록을 할 수 없다.

③ 졸업심사전까지 대여분납금 및 연체료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이 유보된다.

부 칙

① 이 제정세칙은 199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세칙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지1

등록금 대여분납 신청서

[신청기간: -]

학과(과정)		학년(차수)	학년(차)	학번	
성명		전화번호		핸드폰	
이메일			기혼여부	기혼 <input type="checkbox"/>	미혼 <input type="checkbox"/>
주소					

수업료총액(A)	납부금액(B) 1차 납부액	대여신청금액(C) 2차 납부액	비고(D)

***** 대여분납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신청하는 학기마다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홈페이지 공지 사항 대여분납신청안내의 유의사항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*****

1. 대여분납신청금액(C)은 수업료(장학금공제전 금액)의 50% 이내입니다.
(대여분납신청 금액(C)란에 금액을 적어주시거나 비고(D)란에 원하는 %를 적어주세요.)
2. 대여분납금은 개강 후 **2개월이내 (년 월 일)까지 상환하여야** 하며, 별도의 고지서는 발송하지 않고 경리계에서 직접 수납합니다.
[위 기간 이후에 상환할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료(1개월경과마다 월1%)를 납부해야 합니다.]
3. 대학에서 장학금 수령시는 대여신청금액(C) 2차 납부액에서 공제됩니다.
4. 학사일정상의 학기말고사 마지막 일까지 대여분납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 학기 대여분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5. **대여분납금 미상환시의 조치(대여분납제 시행세칙 제7조)**
 - 1) 대여분납으로 등록한 해당학기의 종강일(학사일정상의 학기말고사 마지막일)까지 대여분납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**제증명서의 발급이 중지됩니다.**
 - 2) 대여분납금을 미납한 학생은 **다음 학기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**
 - 3) 마지막 졸업학기에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**졸업심사에서 제외됩니다.**
6. **대여분납 신청시 제출서류안내**
 - 1) 본인이 기혼자일 경우
 - 가. 대여분납신청서
 - 나.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
 - 2) 본인이 기혼자가 아닌 경우(미혼)
 - 가. 대여분납신청서
 - 나. 보호자 확인서
 - 다.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(본인, 보호자)

본인은 학년도 학기 등록을 함에 있어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등록금대여분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년 월 일

신청인 : _____ (인)

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

1차납부액 : 년 월 일 - 일 16:00까지 / 월 일(토)부터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새로 출력 은행에 납부

2차납부액 : 별도의 고지서 없이 월 일까지 경리계로 납부(이후에는 연체료 부과됨)